

##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제159호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04. 6. 16.  
발 의 자 : 강연중,조기덕,신영균

###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나 그동안 의회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도모코자 함.

### 주요골자

- 의회 발의 또는 군수가 제출한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개시일 7일전까지 의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명시코자 함.  
(안 제20조제2항)
-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의안이 해당의원에게 3일전까지 배부되도록 정하고자 함. (안 제20조제3항)

###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63조
-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21조

예산군 조례 제 호

##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및 군수가 제출한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회기 개시일전 7일전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그 회기에 소관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회부한다.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.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신 · 구 조문대비표】

현행	개정안
<p>제20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</p>	<p>제20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발의 및 군수가 제출한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회기 개시일전 7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그 회기에 소관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회부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.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④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